#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3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권칠승·소병훈·김남희

조 국・송재봉・강준현

이병진 • 이기헌 • 김준형

임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 사청문을 마쳐야 함(안 제6조제2항).
- 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이내로 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료의 공개가 곤란할 경우 자료제출에 갈음하여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공직윤리청문회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로, "3일이내"를 "5일이내"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 열람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자료제출에 갈음하여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등 자료의 비공개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 이후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동 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비공개 열람을 한 것으로 자료 의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기관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운 대통령당선인이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전단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
| 인사청문) ① (생 략)            | 인사청문) ①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
|                          |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
|                          |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       |
|                          | 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
|                          |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
|                          | <u>구분하여 실시한다.</u>     |
| <u>&lt;신 설&gt;</u>       | ③ 공직윤리청문회는 제14조에      |
|                          | 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
|                          | 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     |
|                          | 를 공개할 수 있다.           |
| ② (생략)                   |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
|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          | 2                     |
| 된 날부터 <u>20일</u> 이내에 그 심 | <u>30일</u>            |
| 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         |                       |
| 다.                       |                       |
| ③ • ④(생 략)               | ③・④(현행과 같음)           |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 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                       |
|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인사청문  | <u>20일</u>            |

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u>3일이내</u>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 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③(생 략) <신 설>

| <u>5일이내</u> |
|-------------|
|             |
|             |
|             |
|             |
|             |
|             |
|             |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 열람 등) ① 제12조제1 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자료제출에 갈음 하여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 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공직후보 자의 사생활 보호 등 자료의 비공개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 공개 열람 이후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동의를 얻 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다 만, 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비공개 열 람을 한 것으로 자료의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고에 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